

농촌보건에 앞장 서기를



~총회시 축사에서~

<보건사회부장관> 정 희 섭

오늘은 내가 집을 떠나온지 5,6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침 이 곳에서 대한간호협회 총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곳에 와 보니 모두 낯익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마치 먼 여행에서 돌아와 가족들의 환영을 받는 듯한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에 태어나서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며 또 같은 보건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애끼고 격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협조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인으로서의 자세와 행정에 있어서도 후배들에게 올바른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제3차 계획을 서

두르고 있는데 이 제3차 계획의 특징은 제1차, 2차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얻어진 자원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사회개발 계획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사회개발 계획으로서 상수도, 교통, 통신으로 뒷받침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으로서는 윤리, 도덕, 문화등 국민의 정신적인 갈걸을 제시할 지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농민이 전국민의 48%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더욱 줄어들어 35%로 떨어질 것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옛날부터 대가족제도 밑에서 살아 오면서 알거나 모르거나 일정한 윤리관, 도덕관, 인간가치관이 설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도시로 옮겨움에 따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쓸달음질치고 있어 정신적인 유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에서는 국민의 정신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회조사가 잘 되어야 하며 UNISEF나 국내 기관등의 도움을 받아 대도시 주변의 여러가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기점으로 사회계획을 수행해야겠습니다.

저는 월여전 월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원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산악의 주민들과 아주 친근해 있어서 한국의 의사나 간호원들은 절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즉 「베트콩」이나 주민들과 아주 친숙해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의지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는 한국의료단을 좀더 증파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우선 적은 「팀」의 의료단 몇개를 더 보내줄 수 없느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단은 이처럼 의료단으로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친근해져서 후방 평정계획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보건에 있어서의 조적이 비슷한 「필리핀」과는 보건요원의 상호교류가 합의되어서 앞으로 같은 수의 보건요원이 6개월~1개년간 「아이디어」 교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간호협회의 간부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면 국제적으로도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회개발 계획분야가 확장되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보험제도가 확장되고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제도등 직장단위로 보험제도가 상당히 확장될 것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국민인구의 7할 가까이가 보험에 들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국민을 보험으로 cover하게 되어 의료제도상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보험인구가 없는 개업의 제도는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수는 3할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요원이 3배는 더 늘어야 하니 10년 안에 이에 대비할 인적자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이 요원획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해야 될 당면과제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의료권 확립이란 보건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방방곡곡 두메산골까지 파고 들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산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 화전민이나, 광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 보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를 연구해서 농촌보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第35回

定期總會報告

—1967년 4월 6, 7, 8일—

강원도 원주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한 간호협회 제35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원도 원주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대한간호협회 강원지부의 초청으로 원주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총 대의원수 92명 중 89명 참석으로 약 97% 출석의 성황을 이루었으며 사흘동안 계속된 의사진행순은 다음과 같다.

제 1 일

〈4월 6일 오전 10시〉

제1부회장 이귀향씨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에는 국민의례, 애국가 봉창에 이어 회장 홍신영씨의 개회사 및 정회섭보건사회부장관의 격려사와 강원도보사국장의 축사, 이등진 원주시장, K MAG 간호고문관 Col. Taylor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간호사업 유공자 표창으로 간호행정 부문에 황영희 (보사부간호사업과장)씨, 조직부문에 권석혜 (경북의대병원 간호과장)씨, 임상부문에 매혜영 (부산일신병원 간호원장)씨, 간호교육 부문에 변마지 (전주에

수병원 간호학교장)씨에게 각각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오후에는 본총회의 주제로 되어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박연호 (중앙공무원 훈련원 부교수)씨의 강의를 있었고 간호보조원제도에 대한 간호교육부문, 임상간호부문, 보건간호부문, 조산간호부문의, 4분과의 group 토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간호부문에서

본 간호보조원제도

1.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의 내용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간호보조원의 직급은 당연히 간

〈총회보고〉

호원의 직급과 차이를 두고 따라서 간호원의 현직급과 채우는 개선 되어야 한다.

- 3. 졸업간호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므로서 전문간호원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수간호원을 위한 지도력, 행정, 정신면의 교육을 간호협회에서 계획 실천해 주기 요망한다.
- 4.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무자격간호 행위자들의 명칭, 복장, 캡 등을 유자격간호원의 그것들과 구별하는 법적조치를 건의할 것 등이다.
〈사회이송회〉

**보건간호 부문에서
본 간호보조원 제도**

- 1. 무의존 해소 문제는 간호보조원 제도를 두므로써 해결될 것인가? 공의배치가 선결문제이며, health team 중 보건간호원 1명, 위생원 1명, 간호보조원 2명인데 간호보조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자격있는 보건간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a) 보건간호원의 법적 자격 확보 (보건간호원 보—드자격제도)
 - b) 보건간호원의 대우개선, 초급 4급부터 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토록 (보조원이 5급)
- 2. 업무한계
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보조원의 업무한계를 주무부에 강력히 반

영시키도록.

- a) 연령문제—만 18세 이상.
- b) 법적으로 보—드자격을 확보키로 결의함.

〈사회이경식 서기 김진희〉

**조산간호 부문에서
본 보조간호원제도**

단기계획안 :

- ① 간호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조산행위는 일체 금한다.
- ② 지방별 “성인교육”을 활발히 시행한다.
대상 : —유경험자(할머니, 아주머니, 가정주부)
대우 : —증명서를 부여한다. (지역을 정하여 실습시킨다.)

장기계획안 :

-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많은 조산원을 교육시키는 원칙으로 한다.
- ① 간호원, 조산원의 자격 겸비자에 대한 대우개선, 적어도 벽지수당을 추가할 것. (최저 10,000원)
- ② 현조산수습과정 1년기간을 6개월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지원자가 있도록 한다.
- ③ 현행 조산수습과정에 대해 정부로서 예산을 책정 보조할 것 등이다.

〈사회하영수 서기 문정희〉

**간호교육 부문에서
본 간호보조원제도**

1. 간호보조원 양성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간호보조원 양성은 정규간호학교에서 취급할 수 없다.

A. 문제점

1. 현간호학교 역량상(교직원, 시설, 경비등)으로 과잉업무이다.
2. 양성 수료후 양성 받은 기관과 관련하여 정규간호학교 졸업자와의 혼동이 오기 쉽다.

요망사항 :

1. 보조원 양성으로 필요한 예산 및 기타일체를 보사부에서 담당할 것.
2.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보조원 양성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것.
3. 양성도 교육의 문제인만큼 문교부와의 행정상의 계통과 지시와 절차를 필요로 한다.

B. 양성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교과내용과 크게 다르므로 재검토 및 재추천을 요망한다.

요망사항 :

1. 보조원의 업무분야가 임상, 보건, 조산에 있어 각분야당 그 교육기간이 최소한 4개월 이상을 요하는데 급변 벽지 보건분야에서 종합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개월이 되어야 한다.
2. 간호고등기술학교에 관하여, 급변 벽지 보건분야로 활동할 간호보조원 제도에 따라 간호고등기술학교 존속 및 재활에 관하여 토의한다.

- ① 현정규 간호학교 입학 지원자수가 평균 4:1이상에 달하는 사실과
- ②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생 연령은 대체로 법적 성인 연령에 미달이고
- ③ 간호보조원은 사회적 경험년수를 종합해서 대체로 성인연령에 달하고 있는 바 간호고등기술학교 출신과 간호보조원과의 업무상 지도 및 감독이 실효가 없다는 문제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 :

현존 간호고등기술학교를 기한부로 정규간호학교로 승격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되 간호보조원 양성기간으로 전환시켜 간호사업중 전문적 및 비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확실한 구분을 정할 것 즉 업무분야에 있어서 전문간호원이란 정규 간호학교 이상 출신자, 비전문간호원이란 간호보조원을 들어 이상과 같은 제안을 본회가 보사부 및 문교부에 건의할 것을 요망한다.

<사회 최정자 서기 홍영숙>

제 2 일

<4월 7일 오전 9시>

회장 홍신영씨의 사회로 세계보건일에 대한 취지설명과 이날 표창받게 된 10명의 회원에 대한 치사가 있었고 초청해 준 강원지부측에 감사하는 인사도 있던 후 서기 이혜정씨의 대의원 설명이 있었고 회의특 낭

〈총 회 보 고〉

독이 있자 약간의 분구수정이 있을 후 박한나씨 등의 유분자씨 재청으로 그대르 받아드리기로 가결되었다.

간호업무부문 사업보고, 경제복지사업보고, 특별위원회보고, 해외진출 회원을 위한 사업보고, 공보활동 사업보고, 출판사업보고 그리고 각지부 보고가 있었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후 그대르 받아 드리기로 되었다.

사무 및 사무보고

사무보고. 간호교육부문 사업보고,

1966년 4월분 경상비 보고서

지 출 부			수 입 부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62,235	급료 60,700(7명분) 잡급 1,535	회 비	7,840	
여 비	2,460	지방 이사 여비	잡수입	22,970	간호학문제집대 14,720 추천서대 7,900 기타
비품비	2,100	등사판 1개	간호지대	16,920	
소모품비	3,825		광고료	36,000	간호지 광고. 수입액
교통비	3,000		월 계	83,730	
통신비	2,016		전 월금	844,418	
인쇄비	33,600	회원증, 회원카드등	합 계	928,148	
도서비	230	신문대			
잡 비	655				
유지비	3,667	지적도본 확인 측량 2,600 전기요금, 수도요금 야경비, 청소비, 기타			
회의비	131,215	총회비 126,430 이사회비, 위원회비 등	참고		
판공비	2,000				545,485—은행예금
사업비	135,528	간호지 제작비 91,658 지부보조비 36,000 경조비 6,870 기타 사업비 1,000			132—현 금
월 계	382,531				
금월달 잔액	545,617				
합 계	928,148				

1966년 4월분 출판부 보고서

지 출 부			수 입 부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해생5관 제작비	381,750	인쇄비 잔액 369,000 인세 12,750	해생5관	19,470	
운송비	973		기 존 간호학	700	
출판 협회비	800		대 과 간호학	16,660	
월 계	383,523		월 계	36,830	
금월발 잔액	336,865		전 월 이월금	683,558	
합 계	720,388		합 계	720,388	
			참 고 336,740—은행예금 125—현 금		

1966년도 경상비 수지결산서

수 입 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예 산 액	실 수 입 액
회 비	2,400,000	2,348,150
간 호 지 대	696,000	478,180
잡 수 입	130,000	143,665
전 년 도 이 월 금	545,617	545,617
총 계	3,771,617	3,515,612

〈총회보고〉

지출부

관	항	목	예산액	실지출액	차액
사무비			1,297,100	896,728	400,372
	인건비		933,100	692,635	240,465
		급료	906,180	660,250	245,850
		잡급	27,000	32,385	-5,385
	여비		40,000	23,850	16,150
	비품비		30,000	28,330	1,670
	수용비		294,000	151,913	142,087
		소브준비	36,000	28,444	7,556
		교통비	72,000	56,374	15,626
		통신비	90,000	54,350	35,650
		인쇄비	74,000	4,800	69,200
		도서비	10,000	7,190	2,810
		잡	12,000	755	11,245
유지비			100,000	58,856	41,144
	과동비		30,000	29,420	580
	전기수도비		20,000	11,299	8,701
	야경청소비		3,000	1,090	1,910
	수리비		47,000	17,047	29,953
회의비			228,000	66,770	221,230
	총회비		150,000	0	150,000
	이사회비		48,000	17,285	30,715
	위원회비		90,000	49,485	40,515
관공비			50,000	102,630	-52,630
사업비			1,528,000	1,144,555	383,445
	간호지제작비		600,000	399,143	200,857
	지부보조비		708,000	590,000	118,000

〈총회보고〉

지 출 부

항 목	예산액	실지지출	차액
보건간호학 제작비	300,000	263,210	
의과간호학 제작비	300,000	0	
기초간호학 세관 제작비	300,000	100,000	
내과간호학 세관 제작비		100,000	
출판협회비	4,000	1,200	
운송비	25,000	4,253	
소모품비	5,000	580	
잡비	3,000		
예비비	689,290		
총계	1,626,290	469,243	

기본금보고서

수입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금액	비고
입회비	85,550	
잡수입	20,670	
이월금	125,351	은행이자
총계	231,571	

기성회비보고서

수입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금액	비고
기성회비	273,200	
잡수입	27,692	
이월금	559,658	서울시지부사무실 전세금
총계	860,550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공	사		10,000		마당 탈경 공사비
산	액		850,550		
총	계		860,550		

장학금 보고서

수 입 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금	액	비	고
반	환	금	46,900		대여장학금 반환
잡	수	입	19		은행이자
이	월	금	42		
총	계		46,961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대	여	장	학	금	
			46,900		
잔		액	61		
총		계	46,961		

ICN회비 수지결산서

수 입 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금	액	비	고
I	C	N	회	비	
			530,200		
잡	수	입	12,393		은행이자
이	월	금	21,585		
총	계		564,178		

〈총회보고〉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I C N 회 비	262,044	1967年度分 I C N 회비
잔 액	302,134	
총 계	564,178	

퇴직금 적립금 보고서

수 입 부

자 1966. 5. 1
지 1967. 2. 28

항 목	금 액	비 고
경 상 비	70,000	은행이자
잡 수 입	634	
이 월 금	38,170	
총 계	108,804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퇴 직 금	36,413	직원 2명 퇴직금
잔 액	72,391	
총 계	108,804	

대한간호협회 1967년 2월말현재 재산내역

(1) 동 산 부

적 요	금 액	비 고
경 상 비 산 액	928,821	은행예금 925,280
기 성 회 비 잔 액	850,550	현금 3,541
기 본 금 잔 액	231,571	

ICN 회비 잔액	302,134
경노회비 잔액	44,349
장학금기금잔액	61
퇴직금적립금잔액	72,391
AKF 보조금 잔액	18,375
총 계	2,448,252

(2)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대지 79평 4층 동지상 연와급 목조 2층 건물 본가 일동
 가격 3,200,000원(購入 當時 價格)
 7,680,000 (現時價)

대한간호협회 1967년 2월말 현재 출판부재산내역

적 요	금 액	비 고
1. 출판부기금잔액	179,510	은행예금 179,138
2. 서 적		현금 372
해생 4 판		재고부수 13부 $490 \times 13 = 6,370$
해생 5 판		재고부수 993부 $590 \times 993 = 585,870$
육아와간호		미수금 249부 $590 \times 249 = 146,910$
기초간호학재판		재고부수 1,546부 $150 \times 1,546 = 231,900$
내과간호학		재고부수 2000부 $560 \times 2000 = 1,120,000$
		재고부수 600부 $490 \times 600 = 294,000$
		미수금 96부 $490 \times 96 = 47,040$
총 계	2,611,600	

각지부 회비 납부상황

지: 1966. 5. 1
지: 1967. 2. 28

기 부 명	회 기 납 부 자 수					금 액	비	고
	66년도	65년도	64년도	63년도	62년도			
서울시지부	2,764	294	143	51	—	1,247,580	66년도분2,764명 65년도분 295명 64년도분 143명	
진 " "	583	—	—	—	—	233,200	66 " " 51 "	
부 " "	443	21	10	3	—	180,310	66 " 443 " 65년도분 21명 64년도분 10명	
경 " "	163	—	—	—	—	63,300	66 " " 3 " 65년도분 21명 64년도분 12명	
경 " "	268	21	12	3	—	117,460	66 " 268 " 65년도분 21명 64년도분 12명	
진 " "	280	13	3	1	—	117,380	66 " 280 " 65 " 13 " 64 " 3 "	
진 " "	257	29	9	5	2	110,420	66 " 257 " 65 " 29 " 64 " 9 "	
충 " "	242	6	3	1	—	97,790	66 " 242 " 65 " 6 " 64 " 3 "	
충 " "	80	6	2	—	—	34,520	66 " 80 " 65 " 6 " 64 " 2 "	
경 " "	166	7	—	—	—	67,630	66 " 166 " 65 " 7 "	
강 " "	182	4	—	—	—	74,160	66 " 182 " 65 " 4 "	
제 " "	11	—	—	—	—	4,400	66 " " " " " "	
합	2,348,150							

〈 附 表 〉

각지부 기성회비 납부상황

자. 1966. 5. 1
지. 1967. 2. 28

지 부 명	납부 자 수	금 액	비 고
서울시지부	446명	177,800	
군 진 "	34 "	13,600	
부산시 "			
경 남 "			
경 북 "	32 "	11,200	
전 남 "	49 "	18,600	
전 북 "	48 "	19,200	
충 남 "			
충 북 "	19 "	7,400	
경 기 "	16 "	6,400	
강 원 "	34 "	13,600	
제 주 "	1 "	400	
무 명 씨	1 "	5,000	
합 계	680명	273,200원	

오후에는 1967년도 예산안 심의, 196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정
판 및 세칙 수정안 심의, 기타 의안 심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967년도 경상비 예산 안

자. 1967. 5. 1
지. 1968. 4. 30

		수 입 부		
항 목	1966년도 예산	실수입액 67.1월말	1967년도 예산	산 출 기 준
회 비	2,400,000	2,211,090	3,540,000	600원 × 5,900명

〈총회보고〉

잡 수 입	130,000	124,919	100,000	은행이자 및 추천서 증명서대 등
이 익 금			100,000	문제집 이익금
간 호 지 대	696,000	461,780	810,000	50 원 × 2,700 부 회
전 이 본 월 금	545,617	545,617		
I C N 회 비			590,000	
총 계	3,771,617	3,343,406	5,140,000	

관 항 부	출			산 출 기 초
	1966년도 예산	실지출액 67,1월말	1967년도 예산	
인 기 비	933,100	626,185	1,383,520	
급 료	906,100	598,950	1,351,520	월봉 월 연수당 18,000×13+60,000 14,040×13+36,000 14,040×13+24,000 12,480×13+24,000 12,480×13+24,000 9,000×13 6,000×13 5,000×13 5,000×4
잡 급	27,000	27,235	32,000	1,000×12
여 비	40,000	15,090	70,000	

관 항 목	1966년도 예산	실지출액 67, 1월말	1967년도 예산	산 출 기 초
비품비	30,000	26,300	50,000	
수요비	294,000	138,026	366,000	
소모품비	36,000	28,084	50,000	
교통비	72,000	49,844	96,000	회장 거마비 5,000×12 기타 일반교통비
통신비	90,000	49,313	100,000	전화요금 포함
인쇄비	74,000	4,800	100,000	팜부렛
도서비	10,000	5,230	10,000	
잡비	12,000	755	10,000	
유지비	100,000	56,783	185,000	
과동비	30,000	29,420	50,000	
전기수도료	20,000	10,106	30,000	
야경청소비	3,000	1,010	5,000	
수리비	47,000	16,247	100,000	
회의비	288,000	59,628	350,000	
총회비	150,000		200,000	
이사회비	48,000	14,975	50,000	이사 및 위원 교통비
위원회비	90,000	44,653	100,000	단가 200원씩 예산
관공비	50,000	70,200	150,000	
사업비	1,528,000	1,078,215	1,920,000	
간호지 제작비	600,000	398,403	810,000	135,000×6회

〈총회보고〉

지부보조비	708,000	531,000	708,000	
교육위원회	30,000	2,0370	50,000	
경제복지회	10,000	0	130,000	
간호윤리회	5,000	0	12,000	
공보활동회	35,000	20,675	40,000	
임상간호회	10,000	0	20,000	
보건간호회	20,000	0	20,000	
조선간호회	7,000	0	20,000	
학교간호회	13,000	5,000	20,000	
특별위원회	10,000	0	0	경제복지 위원회에 포함
경 조 비	40,000	19,695	40,000	
기타사업비	40,000	101,072	50,000	
I C N 회 비	135,000	143,291	590,000	
퇴직금 기금	70,000	70,000	63,504	
예비비	303,517	103,461	11,976	
총 계	3,771,617	2,387,679	5,140,000	

1967년도 출판부 예산 안

자. 1967. 5. 1
지. 1968. 4. 30

항 목	수 입 부		
	1966년도 예산	실수입액 67.1월말	1967년 예산
해 생 4 권	6,370		0
해 생 5 권	413,000	93,810	590×700=413,000

내과간호학	245,000	114,170	$490 \times 700 = 343,000$
기초간호학	210,000	49,350	
기초간호학채관			$560 \times 700 = 392,000$
육아위간호	30,000	3,810	$180 \times 50 = 9,000$
잡수입	5,000	2,387	5,000
미수급	380,055		
전년도이월금	336,865		0
보건간호학			$560 \times 600 = 336,000$
외과간호학			50,000
총계	1,626,290	600,842	1,548,000

항목	지출부		
	1966년도 예산	실수입액 67,1월말	1967년도 예산
보건간호학 제작비	300,000	263,210	500,000
외과간호학 제작비	300,000	0	100,000
기초간호학 제작비	300,000	100,000	600,000
내과간호학 제작비		100,000	300,000
출판협회비	4,000	1,200	6,000
운송비	25,000	1,712	25,000
소모품비	5,000	0	5,000
잡비	3,000	0	3,000
예비비	689,290		9,000
총계	1,626,290	466,122	1,548,000

◁1967년 사업계획서▷

(1967년5월1일~1968년 4월30일)

1967년도는 지부강화의 해로 하여 모든 사업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앙회가 관장하던 사업을 대폭 각지부에 이첩하는 동시에 협회는 차원 높은 사업을 착수한다.

총무관계사업

1. 각지부 상무 또는 동류의 사무를 집행할 직원 또는 임원 집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지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본협회의와 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한다.

기간 : 2일

참석 : 12지부에서 필히 참여

강의 : 6시간(토의 기타)

2. 회원 신상기록서 정비

전회원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회원의 동태 파악에 신속 정확을 기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3. 회원 통계

지부이첩사업

1. 간호원 정기신고사무,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징수.

2. 회원 실태조사, 분석, 통계 작성을 하여 본협회에 보낸다.

간호교육부문사업

간호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1. 간호교육전문가를 계속 채용하여 간호교육부문의 제반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미재단(AKF)에 교육사업을 위한 원조를 요청(1967년3월24일) 하였다.

2. 간호지도자강습 개최

간호교육자를 위하여 2회, 간호행정관을 위하여 2회 도합 4회를 계획한다.

기 간 : 2주간

참석인원 : 40~50명(미회)

강 의 : 60시간

3. 간호지도자 교육기관 설립 추진
UNICEF등의 의원기관 및 정부의 원조를 모색하여 장기계획으로서 질적 양적으로 부족상태에 있는 지도자 양성기관(P. G. school)설립을 추진한다.

정부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년~1971년)내에 간호학교 20개교 신설, 기존 23개 간호학교에 87학급 증설, 간호보조원 5,624명의 4~6개월 단기훈련 등의 많은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나 이에 따른 지도자 양성 계획은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 대여자 장학금 제도 실시.

전년도의 계속사업

5. 간호학문제집 방향 검토

6. 정부가 시행하는 제회의 세미나

나에 적극 참여한다.

지부이첩사업

1. 보건소 간호원 월례 집담 개최
2. 월례 간호원장회 및 임상각분야의 집담회를 개최하여 간호원의 수준향상을 모색하고 특히 지도력 고취에 이바지한다.
3. 양호교사 월례회를 가져 협회 활동을 통한 자신을 얻도록 한다.

경제복지사업(특별위원회사업)

1. 간호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 ㄱ. 국공립병원 간호원의 간호적수당 책정.
 - ㄴ. 각급학교 양호교사들의 T.O 확보 강의시간 배정(보건교육 위생)등
2. 간호행정망의 대폭 강화를 모색 행정기능의 효율적인 발휘를 도모한다.
3. 간호원의 취직 조건 개선을 위한 자르수집, 병원 협회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여론화 한다.

지부이첩사업

1. 지부산하 각기관의 급료 일람표를 작성한다.
2. 간호원의 취직 조건 실태조사
3. 요구호대상 회원 실태조사와 대책 모색

공보섭외사업

1. 협회 「팜프렛」 작성

ㄱ. 협회 조직 운영 연혁

ㄴ. 협회정관, ICN정관, 나이팅겔 서약문.

ㄷ. 협회 가입 권고.

2. 주간 전문지, 일간지, “대한간호”를 통하여 협회 활동상황 및 사업을 계속 보도 한다.

3. 방송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보도한다.

4. 간호원이 기념해야 할 날을 제정하여 간호사업을 널리 P.R 한다(간호윤리위원회 계획)

5. 보건사회부, 간호협회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6. 동남아 ICN회원국 회장단 초청과 동남아간호연맹 조직에 관한 검토.

7. 회원 소식지 발급 :

회원소식지를 격월간으로 지부를 통하여 각회원에게 송부한다.

지부이첩사업

1. 나이팅겔 생신을 위한 공보활동.
2. 산하 각 간호학교 상급반에 협회활동, 각지부활동을 포함한 특강을 하도록 한다.
3. 지부의 활동상황을 주간지, 일간지 “대한간호”를 통하여 계속 보도한다.

해의 체재중인 회원을 위한 사업

1. 해외 체재중인 회원 실태조사,

지상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 집계하여 평가한다.

2. 제독 한국 간호원회 조지를 완료하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 캐나다 등 제국에 같은 회를 조직하여 해외 재재 회원과의 유대를 긴밀히 한다.
3. 회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장학금을 획책하고 선발하여 추천한다.
4. 해외진출 회원의 생활지도 방안으로써 연 4회 해외에서 귀국한 회원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지 “대한간호”에 기재하여 강제성을 피한 생활지도를 한다.

지부이첩사업

1. 해외진출 회원을 위한 생활지도 실시 (언어 및 풍습에 있어서 해외생활에 적합하도록 지도한다)
2. 각지부 단위로 해외 재재증인 회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 : 잡지 모으기 운동, 신문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출판사업

1. “대한간호”적월간으로 출판 매호 3,000부
2. 간호학 문예집 제6권 1,200부 출판
3. 의과간호학 출판 2,000부

건축기성위원회사업

회관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한다.

이상 사업계획에 추가된 재의는 다음과 같다.

①첫번째 지부상부집담회는 5월의 의로업자 일제 신고 전에 할 것.

②「나이팅게」기장 수상시 부상을 받도록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할 것.

③양호교사 지도 감독을 위한 보건전문 장학사를 각도에 배치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할 것.

④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경제복지 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것.

⑤해외진출 회원을 위한 생활지도 실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 줄 것.

⑥회비 인상 문제로 찬반 양론이 구구했으나 200원을 인상하자는 이성욱씨 의견에 하영수씨 등의 유분자씨 재청으로 거수 표결에 부쳐 87명중 48명으로서 가결되다.

정관및세칙 수정안 심의

이영복 정관세칙 수정위원장의 1966년도 총회에서 배부한 정관 및 세칙수정안과 금년도 안의 차이점을 설명 듣고 변경된 조항만을 심의했으나 현실행 정관에서 다음 사항만이 개정되었다.

①제5장 제3절 제43조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은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제5장 제3절 제44조의
 7에 있어서,
 섭외공보위원회 : 본회 목적과 취
 업의공보위원회 : 본회 목적과 취
 업의 국내외에 소개, 국내외 단체와
 의 교류, 간호사업에 관한 공보활동
 에 관한 사항, 간호원 국제교류에 관
 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계몽.

부칙과 세칙은 이사회에 일임키로
 홍육순 등의 김아덕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기타 의안

1. 전문간호교육에 관하여 :

Group토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문
 간호원의 질적 저하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등간호기술학
 교의 폐지를 강력히 전의하기로 이
 경식씨 의견에 김을란씨 등의 김암녀
 씨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2. 해외로 출국하는 간호원 및 간 호보조원 교육에 관한 건 :

간호원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반
 드시 협회를 통하여 봉하도록 조치키로 하
 고 해외에 나가 있는 회원들에게 “대
 한간호”지를 구독하도록 하는 동시
 에 그들의 원고도 실려 관심을 갖도
 록 하자는 엄효임씨 의견과 간호보
 조원은 병원에서 교육시키자는 전의

서를 내기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일
 임키로 권석혜씨 등의 김을란씨 재
 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3. 간호협회와 조산협회의 통합문제,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안을
 이사회에 일임키로 김순봉씨 등의 김
 을란씨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4. 회관 건립에 관하여,

정년 퇴직자의 수용을 겸한 협회
 회관을 짓도록 하자는 김을란씨 등
 의에 김순봉씨 재청으로 전원 가결
 하고 기성위원회는 각방면의 인사를
 총망라한 전원위원회로서 이사 전원
 을 포함한 기성위원회로 그 조직은
 이사회에 일임키로 하자는 전신춘씨
 등의에 홍근표씨 재청으로 전원 가
 결하다.

5. 기성회비문제 : -

기성회비 전부를 지부 기성금으로
 하자는 이성옥씨 의견에 이승희씨 등
 의, 이화순씨 재청이 있었으나, 본
 협회의 회관을 짓기로 결의한 이때
 기성회비를 지부에 준다는 것은 불
 가하다는 전순덕씨 제의에 이경식씨
 등의 김을란씨 재청으로 본회에 올
 리기로 42 : 32로 가결되다.

6. 경노회비 징수에 관한 건 :

196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각지부
 산하 요구호태상 회원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여 시행토
 록 하다.

〈총회 보고〉

7. 감사 선출 :

선출 방법에 있어 전형위원 3명을 회원수가 많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하자는 최보배씨 동의, 길울란씨 재청으로 이성욱, 소숙경, 노보신, 3명이 홍영숙, 최보배, 이송희, 김길순 4명을 후보선출한 다음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 홍 영 숙 18
- ◎최 보 배 45
- ◎이 송 희 50
- 김 길 순 29

8. 1968년도 총회 장소

내년도 총회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기간은 3일로 하자는 유순애씨 동의에 반순랑씨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9. 건의문 작성에 대하여

이상 결의된 사항을 추려 모아 건의문을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전하고 각일간신문과 전문지에 기재하도록

하자는 이송희씨 동의에 이경식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결의문 작성위원으로 이영복 홍옥순, 최정자, 이송희, 이경식, 5명을 선출하여 작성후 총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다.

제 3 일

〈4월 8일 오전 8시〉

위원들이 밤새워 초안 작성한 결의문을 이영복씨가 낭독하자 이틀그대로 채택하자는 이혜정씨 동의에 전산초씨 재청으로 전원 가결하다.

이 결의문은 건의문으로 하여 동아일보(4월13, 14일)와 서울신문(4월15일)에 기사와 광고로 기재되었으며 동양방송과 서울중앙 방송에서도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는데 다음에 그 건의문을 실겠다.

建 議 文

大統領閣下께 드리는 建議文

祖國近代化와 民主主義 發展으로 國民의 福祉向上을 이룩하기 위하여 不撤晷夜 분투 노력하시는 閣下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今般 本協會는 4월6, 7, 8日 3日間에 걸쳐 江原道原州에서 開催된 定期 代議員 總會에서 國家 第二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과 우리들의 黨面問題를 진지하게 討議하였습니다.

이를 成功的으로 遂行함에 있어서 國民保健이 얼마나 重要하다는 점을 再認識하면서 大韓看護協會 6千餘會員들은 우리의 힘을 한데 묶어 急進的으로 發展中인 産業復興과 經濟開發의 原動力인 國民保健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同時에 그 一線實務의 大部分을 擔當하고 있는 看護事業의 緊迫性을 切感하여 全會員이 一致 團結 倍前의 活動을 펴기로 決議하였습니다. 오늘날 專門的教育을 받은 看護員은 國民保健과 醫療을 위한 「팀워크」(team work)에 있어서 醫師 其他 醫療保健要員들과

더불어 重責을 맡고 있으며 各綜合病院, 都市 農村保健所·學徒 保健을 위한 看護教師·産業分野 醫務室·家族計劃要員·派越醫療院等 政府主要施策實施分野에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看護員의 量的需要와 質的向上的 要求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當面한 우리의 現實을 살펴볼 때 人口自然增加에 따르는 醫療施設의 增加, 第2次經濟開發五箇年計劃에 의한 保健醫療機關의 擴張等으로 看護員의 需要量이 急増한 데다가 看護員의 낮은 職級과 報酬 또는 海外進出急増에 따르는 國內勤務條件이 더한층 惡化되므로 職場을 離脫하는 者의 數가 增加하여 定員을 充當치 못하고 看護員 交替가 빈번하여 全國 保健醫療事業 遂行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不合現狀을 打開하고자 當局에서도 看護員의 量的需要에 대비하여 看護教育機關의 增設 및 學生定員의 增員, 看護補助員의 養成 등 年次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政府施策에 따라 看護員의 需給對策과 質的發展을 위하여는 醫療·保健 全分野에서 協調하지 않는 限 國民保健의 威脅을 免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祖國近代化의 遲延을 가져올 것이라는 事實은 國民 누구나가 念慮하는 바인 줄 압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몇 가지 事項은 과감한 行政的 措置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일 인고로 이를 全會員의 總意에 依하여 大統領閣下에게 建議하는 바이오니 이의 早速 實施를 위하여 特別한 配慮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建 議 事 項

1. 看護員需給을 爲하여 長期的인 看護教育計劃을 세우고 國家豫算을 大幅 增額 策定할 것.

- ① 現存 看護學校의 施設擴充, 教授陣의 定員增加와 더불어 實習하는 病院의 設備과 機能을 教育病院水準에 到達케 할 것. (看護學校規程 文教部令 第166號)
- ② 施設과 教授陣이 具備된 看護教育機關에 限하여는 學生定員을 增員할 것.
- ③ 看護機能은 直接 心身과 生命을 다루는 特殊任務인 만큼 科學的 原則과 理論에 뒤따르는 實習教育의 重要性이 매우 큼으로 看護學校 認可時 實習病院의 與件을 重視할 것.

2. 看護高等技術學校制度는 徹廢할 것

- ① 現在 五箇定規大學 看護學科 外에 20箇의 初級大學令에 의한 3年制 看護學校에서 全看護員 輩出量의 大部分을 輩出시키는데 한때 整備對象으로 되어 있던 中學卒業者를 入學水準으로 하는 數箇의 看護高等技術學校가 復舊되어서 同等的한 免許를 갖게 됨은 制度上으로 不合點함.
- ② 專門의 看護教育이 적어도 人文高等學校의 基本教育을 必須로 하는 理由는 看護의 本質과 科學的 應用 등 教育의 內容과 効果로 보아 絶對 必要한 것이며 또한 看護高等技術學校卒業으로는 年令的으로도 看護行爲에 對한 法的政

任을 지우기 어려움.

- ③現存 全國看護學校의 志願者比率은 해마다 높아가서 高等學校卒業者만도 平均 5對1인데 구대여 水準이 낮은 看護員을 養成하는 것은 社會的 趨勢에 逆行하는 現狀임.
- ④看護補助員制度 (警察補助員施行令 大統領令 第1811號)가 實施되는 이때 그들을 指導監督해야 되는 看護員이 補助員들과 같은 教育水準, 때로는 더 낮은 年齡으로 活動함은 業務自體에 混亂을 招來하여 終局的으로는 國民保健에 侵害를 가져올 것임.
- ⑤大韓看護協會는 西紀 1949年 이때 國際看護協會의 正會員國이며 오늘날은 더욱 活潑한 國際交流로 名實共に 世界的 看護員을 目標로 教育하는 方面에서 國際水準에 逆行할 수 없음.

方案 ①整備方案으로는 看護學校基準에 準하여 期限附昇格특록 하고 昇格이 못 되는 境遇는 補助員 養成에 活用토록 할 것.

3. 看護員의 處遇를 改善할 것

方案 ①看護職 公務員의 職級을 最低四級으로 올려서 現行教育水準(文教部令 第166號)과 業務制度에 現實의오르부함께 할 것.

②教育公務員法에 依하여 各級學校에서 活動하고 있는 看護教師의 初俸은 一般教師와 同等하게 할 것.

③看護職乎當支給으로 現職看護員의 職場離脫을 막고 就業하지 않고 있는 既成 免許看護員들과 看護學校를 卒業하고도 낮은 待遇로 因하여 免許取得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資格者들은 職場으로 나오게 하여 國家經濟面과 需給面等に 도움을 받을 것. (大統領令 第2407號參照)

④僻地手當을 策定하여 農漁村 無醫面保健所에 더 많은 看護員이 갈 수 있게 할 것.

4. 看護補助員의 業務機能을 法的으로 明白히 區分할 것

①看護補助員은 短期養成된 者로서 看護業務中 專門的知識이나 技術 또는 判斷力을 要하지 않은 部分을 擔當하는 者이며 專門看護員의 職責을 代行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補助하는 것이므로 看護員의 指導監督아래서 할 수 있는 補助的機能에 局限되어야 하는 것임

②現行 看護補助員制度는 看護員의 需給量不足과 人口增加에 따르는 醫療保健施設增加 및 無醫面 解消等에 對備키 위한 方案이라고 하나 補助員은 補助的機能에 局限되어야 하는 것이고 看護員의 全體職務를 代行할 수 없으므로 根本的인 看護員의 需給 및 無醫面 解消를 爲한 解決策이라 할 수는 없으며 補助員으로 하여금 看護員의 職務를 代行시키는 行政的 混亂이 일어날 때 國民保健에 끼치는 威脅은 至大할 것임.